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-54호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4442호, ‘13.3.23 시행) 제15조의2 제7호의 **’그 밖에 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‘**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13년 8월 1일
미래창조과학부장관

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

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」제18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7호에 따른 ‘우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’은 **「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」제2조 제6호 ‘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불우이웃 지원 등 공익사업’**과 **「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시행규칙」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사업**으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. 보건·사회복지 관련 사업 : 의료사업, 요양사업, 보육사업, 주거 개선 사업
2. 체육·문화 관련 사업 : 체육활동, 전시·공연의 주최 및 후원 사업
3. 교육 관련 사업 : 교육·장학 사업 및 학술 지원사업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